

대학원 외국인 학생의 특례입학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원 학칙」 제15조에 의거 대학원 외국인 학생의 특례 입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외국인”이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에 규정한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을 말한다. 다만, 복수국적자는 내국인으로 본다.

제3조(모집학과) 모집 학과는 대학원 학칙 제5조〔별표1〕의 각 학위과정 전 학과로 한다.

제4조(지원자격) ① 입학 지원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력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석사학위과정

가.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취득 예정자로서 한국어 사용 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

나.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2. 박사학위과정

가. 국내·외 정규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취득 예정자로서 한국어 사용 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

나.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② 지원자는 수학에 필요한 언어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모집요강에 따로 정한다.

제5조(모집 시기) 외국인 학생의 모집은 정시와 수시로 한다.

제6조(제출서류) 외국인 학생의 입학전형 관련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지원구비서류

가. 입학지원서(소정 양식-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3cm×4cm 상반신 사진 3매 부착) 1부

나. 자기소개서 1부

다. 수학계획서 1부

라. 본인 여권 사본 1부

마. 대학졸업(예정)증명서 1부〔박사학위과정 지원자는 대학 및 대학원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

바.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박사학위과정 지원자는 대학 및 대학원(전학년)성적증명서 각 1부〕

사. 본인 및 보호자(부, 모)의 외국인 증명서 각 1부

아.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외국정부가 발급한 문서 1부

자.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 등 재정능력입증서류 1부

차. 기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2. 합격 후 제출서류

가.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발행하는 외국인 등록증 사본(국내 거주 외국인에 한함) 1부

나. 졸업증명서 1부(졸업 예정자에 한함)

다. 기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전형방법) ① 서류전형 및 구술고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발한다. 다만, 외국에 거주하는 자가 지원한 경우 또는 기타 부득이한 경우 구술고사를 비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예능계는 서류전형과 구술고사로 하되, 경우에 따라 실기고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연구생) 외국인 학생은 대학원 학칙 제36조의 연구생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그 입학 절차는 외국인 학생의 일반학위과정 입학 절차에 따른다.

제9조(장학혜택) 학업성적이 특별히 우수하고, 학과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학원 위원회(국제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은 각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2020.9.1.)

제11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 「대학원 입학전형에 관한 규정」 및 대학원위원회(국제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은 각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다른 규정의 폐지) 이 내규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대학원 외국인 학생의 특례입학에 관한 내규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국제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대학원 외국인 학생의 입학에 관한 사항은 본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